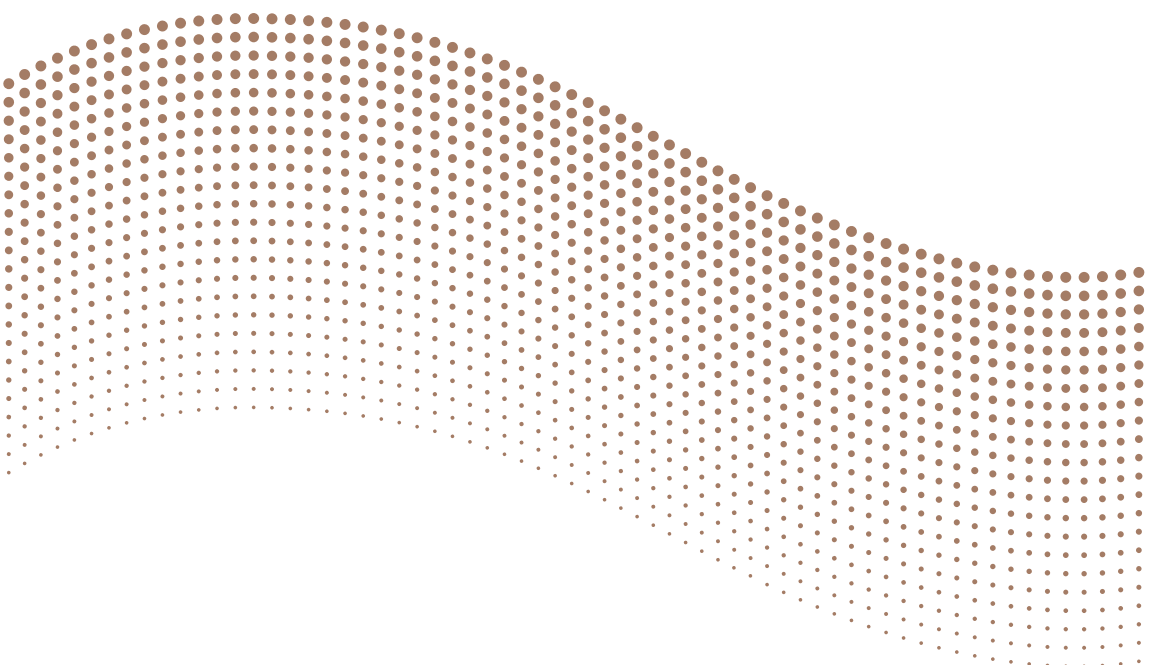


20
25

외국투자자를 위한 비자가이드



20
25

외국투자가를 위한
비자가이드



II 비자(사증)

- 1. 비자(사증) 개요 04
- 2. 비자(사증) 발급 절차 05
- 3. 사증발급인정서 제도 07
- 4. 외국인 투자가 및 가족에 대한 비자 정보 07

III 입국절차

- 1. 기업투자(D-8) 비자 소지자에 대한 출입국 우대 11
- 2. 출입국 우대카드 제도 12

III 국내 체류 제도 개요

- 1.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13
- 2. 체류허가 신청 및 대리 14
- 3. 외국인 체류 시 사전 허가 및 신고 의무(개요) 15
- 4. 외국인 투자가 전용창구 운영 19
- 5. 방문예약 및 전자민원 19

IV 외국인등록

- 1. 외국인등록 제도 22
- 2. 외국인 투자가 및 가족의 외국인등록 절차 27

V 체류기간 연장

- 1. 체류기간 연장 개요 28
- 2. 외국인 투자자 및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 29

VI 체류자격 변경

- 1. 체류자격 변경 개요 33
- 2. 외국인 투자자 및 가족의 체류자격 변경 35

VII 체류자격 부여

- 1. 체류자격 부여 개요 39
- 2. 외국인 투자자 국내 출생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 40

VIII 체류지 변경신고

- 1. 대상 및 시기 41
- 2. 구비서류 42

IX 기타 체류허가 및 신고

- 1.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43
- 2. 재입국허가 45
- 3. 등록사항 변경신고 46

I

비자(사증)

1. 비자(사증) 개요

비자(사증)란?

- 비자(사증)란 원래 의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서 국가 정책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릅니다.
- 외국인 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행위”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구분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입국심사관의 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비자의 종류

- 단수 비자(Single visa)
 - ①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 ②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 복수 비자(Multiple visa)
 - ①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습니다.
 - ②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비자는 3년 이내
 - 복수사증 발급협정에 의한 비자는 협정상 기한
 -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2 · 비자(사증) 발급 절차

비자 발급 신청 장소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비자(사증)는 재외공관(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발급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 다만, 특정한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재외공관에 비자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비자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재외공관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메뉴얼'을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 ※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증발급신청서와 사증발급인정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인정서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

참고사항

- 재외공관장은 발급 권한이 위임된 비자에 대해서만 재량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비자 발급 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비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관장은 비자 발급승인 요청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비자 발급 승인을 요청한 자가 그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국내에 입국 하게 되면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허 처리됩니다.
- 발급된 비자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비자 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새로이 비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 사증발급인정서 제도

- 법무부장관,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재외공관장의 비자 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비자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 내용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 (사증발급 인정 내용을 통보받은 자에 한함)하여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 그 인정내용에 따라 비자를 발급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76조)

4 · 외국인 투자가 및 가족에 대한 비자 정보

기업투자(D-8) 비자

- 기업투자(D-8) 비자는 투자금액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또는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해외 모기업(또는 해외 제3국의 지점이나 지사)으로부터 필수 전문인력* 으로 파견되어 경영이나 관리 및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경영자 또는 전문기술자로 파견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되는 자는 제외) 이어야 합니다.

* 필수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을 경영·관리, 운영하는 임원(Executive) 또는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와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말함.

필수전문인력 범위

• 임원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만을 받는 자(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 상급관리자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지휘/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전문직/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감독/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 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

• 전문가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설계/기술/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 기업투자(D-8) 활동범위 및 해당자

활동범위 및 해당자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기술·연구**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본부(제9조의4) 또는 연구개발시설(제16조)도 포함

** “연구” 분야는 연구개발시설(제16조) 및 방역·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연구인력에 한해 허용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 ②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연구**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 시설(제16조)도 포함
- ** “연구” 분야는 연구개발시설(제16조) 및 방역·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인력에 한해 허용
-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 ④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해당자에 대한 기업투자(D-8)

비자 발급 신청서류 (재외공관 신청)

-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3.5cm×4.5cm)사진 1매, 수수료
- ②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 ③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⑤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 ㉞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④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 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 시 징구)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동반(F-3) 비자

•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부여되며, 동반하는 가족은 기업투자(D-8) 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 단, 동반가족의 여권 유효기간이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의 체류기간 만료일보다 짧은 경우에는 여권 유효기간까지 부여받습니다.

• 동반(F-3) 비자 발급 신청서류 (재외공관 신청)

-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가족관계입증서류
 -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 ③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II

입국절차

1. 기업투자(D-8) 비자 소지자에 대한 출입국 우대

-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출입국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가사 보조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의 신청에 대하여 당일 업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업투자(D-8) 비자 소지자는 전용심사대(Fast track)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체류허가 시에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면제 항목: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수료(3만원),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6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10만원), 재입국허가 수수료(3~5만원)
 -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수수료(12만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수수료(2천원)는 면제되지 않음.



2 · 출입국 우대카드 제도

-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본사 또는 아시아 지역본부의 경영진에 대하여 출입국 전용심사대(Fast track)를 이용, 보안 검색 전용 창구 이용 등이 가능한 출입국 우대카드(Immigration Priority Card)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요건

구분	외국인투자금액(신고기준)
제조업	미화 15백만 달러 이상
금융, 보험	미화 50백만 달러 이상
도소매, 운송, 창고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기타	미화 10백만 달러 이상
연구개발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신성장동력 산업 기술 수반산업	

➔ 신청 및 문의처: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 02-3497-1741



III

국내 체류 제도 개요

1.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외국인의 체류

-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로 구분됩니다.
 - 단기 체류: 체류기간 90일 이하
 - 장기 체류: 체류기간 91일 이상
 - 영주: 체류기간 제한없음
 - ※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외국인의 활동범위와 국내 취업

-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안됩니다.
-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소지 여부 뿐만 아니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였을지라도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문의 후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2 · 체류허가 신청 및 대리

체류허가 신청·수령의 기본원칙

- 각종 허가 등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본인이 17세 미만이거나 질병 또는 가사, 업무상 사정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해당외국인이 그 신청일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외에 체류중인 경우는 대리 불가)
- 신청·수령을 대리할 수 있는 업무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사증발급 인정서발급, 외국인등록(이미 지문등록이 완료된 사람에 한함),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증 수령,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 대리인의 자격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 제2020 - 502호)에 고시된 대리인
 - ※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의 경우 1. 본인이 근무하거나 근무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 2. 기업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음.

- 대리인에 의한 신청·수령시 제출서류
 - ① 신청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임장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의 제출 생략이 가능한 경우
직계가족이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소속기관 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등을 대리하는 경우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이 각종 체류허가신청 등의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 등을 대리하는 경우)
 - ② 수령시 제출서류
 -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접수증
- 대리신청의 제한 등
 - 각종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상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제한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한 것이 밝혀진 때에는 그 허가 등을 취소·변경 조치합니다.

3 · 외국인 체류 시 사전 허가 및 신고 의무(개요)

(1) 사전 허가 의무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예를 들어,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자격별 활동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 활동 또는 일정기간 보수를 받는 직업적 활동 등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교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 문화예술(D-1),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동반(F-3), 방문취업(H-2) 자격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
 - 근무처 변경·추가 사전허가 대상 외국인은 단기취업(C-4), 예술흥행(E-6) 일부 대상자, 특정활동(E-7) 일부 대상자,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체류자격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입니다. (상세 내용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사전 문의 필요)
 -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외국인은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대상이므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 부여

-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 기간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출생한 날부터 90일
 -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체류자격 변경 허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및 단기비자(C-3)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나, 기업투자(D-8) 자격, 방문동거(F-3)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재입국허가

-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그의 신청을 받아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

외국인등록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

(2) 사후 신고 의무

체류지변경 신고

-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 의무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5조)
- 신고사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하는지 여부
 -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이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 그 취업개시 사실

-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이 고용되어 있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가 변경된 경우(명칭 변경을 포함)
-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주재(D-7)부터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선원(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 ❖ 기업투자(D-8) 및 동반(F-3) 외국인의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부여 등 세부 내용은 Ⅳ ~ 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 외국인 투자가 전용창구 운영

- 외국인 투자가의 비자 및 체류 관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KOTRA에서는 종합행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류지에 따른 관할구역 제한 없이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 및 동반가족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입국허가, 한국 출생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 및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 체류지 변경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도 외국인 투자가 전용 창구를 마련하여, 기업투자(D-8) 자격 투자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 · 방문예약 및 전자민원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

- 체류외국인의 민원업무 편의를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날짜와 시간을 예약한 후 예약 접수증을 소지하고 해당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긴 대기시간 없이 민원업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연중 무휴
- 이용자격
 - 하이코리아 가입회원 및 비회원
- 방문예약 가능시간
 - 예약을 신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약 가능
 - ※ 체류기간 연장 허가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예약취소
 - 방문예정일 1일 이전에 취소 가능(방문예약 당일에는 취소 불가)
- 예약무효
 - 방문당일 예약 취소 또는 예약시간 5분 경과 시
 -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창구를 잘못 지정할 경우
- 참고사항
 - 민원인의 실명만으로 예약 가능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해당 신청자 수만큼 예약 필요(행정대행사는 대행을 의뢰한 외국인의 인적사항으로 예약)
 - 방문 시 예약접수증 또는 SMS의 방문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일자, 시간, 창구(호출)번호 확인
 - 방문예약 신청 확인은 [방문예약 신청현황]에서 확인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1345)로 문의

외국인 체류업무의 전자민원 신청

- 법무부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허가, 체류지변경 신고 등 빈번하게 신청하고 있는 외국인 체류업무에 대해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이코리아를 통한 전자민원 대상 업무는 법무부고시 제 2021-4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대상 업무			신청 가능 체류자격
구분	대분류(근거법령)	소분류	
모든 자격 신청 가능	체류기간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제25조)	단기체류자격 체류기간연장허가	모든 체류자격
		등록(거소)외국인 체류기간연장허가	모든 체류자격 ※ 단, 아래 체류자격은 제외 제외 대상 기술연수(D-3), 기업투자(D-8), 특정활동(E-7), 거주(F-2), 결혼이민(F-6), 기타(G-1) 방문동거(F-1) 일부
		등록(거소)외국인 및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모든 체류자격
	재입국허가 (「출입국관리법」제30조)	재입국허가	모든 체류자격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제35조제2호)	여권번호·발급일자 ·유효기간의 변경	모든 체류자격
	체류지·거소지 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제36조, 「재외동포법」제11조)	체류지·거소지 변경(이전) 신고	모든 체류자격
	일부 자격 신청 가능	체류자격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허가 - 허가에 따르는 외국인등록증발급 또는 거소신고·거소증발급 포함
근무처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제21조)		근무처변경허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출입국관리법」제20조)		시간제취업허가	유학(D-2), 일반연수(D-4)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 (「출입국관리법」제19조)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퇴직·이탈 등)	기술연수(D-3), 교수(E-1)~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제35조제3호)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신고	방문취업(H-2)

IV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제도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등록기관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외국인등록 대상자

-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외국인등록 등)

- ①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과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 ① 제40조에 따라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 ② 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와 부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
- 국내 체류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

등록시기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자 ➔ 입국일부턴 90일 이내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신청서류(공통)

-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 표준규격사진(3.5cm×4.5cm) 1매
-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현금, D8 자격자는 수수료 면제)
- 체류지(주택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재발급사유
 - 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 외국인등록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 된 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 재발급시 제출서류
 - 여권
 - 신청서
 -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분실된 경우)
 - 컬러사진 1매(3.5cm×4.5cm) (이전 사진이 6개월이상 경과한 경우)
 - 구 외국인등록증 (못쓰게 된 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법 제35조제1호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는 때)
 - 등록증 발급 수수료 3만원(현금, D-8 자격자는 수수료 면제)
- 재발급장소: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외국인등록증 반납 사유

-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등록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할 때
 - 등록외국인이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국적을 취득한 때
 -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때
 - 등록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의 예외에 해당된 때

외국인등록증 반납 시기

- 완전출국자는 출국하는 때
 - 국민이 된 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가 대한민국 국적취득 증명서류, 외국국적상실 증명서류를 외국인등록증에 첨부하여 반납
 - 사망한 때
 - 배우자, 부모, 허가신청 등 의무자, 사망한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 사망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 진단서 또는 검안서 기타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인등록증에 첨부하여 반납
 - 외국인등록증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외국인등록증 휴대 및 제시

-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항상 여권, 외국인입국허가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단, 만17세미만의 외국인은 제외)
- 외국인인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시·군·구의 등록담당자 포함)등이 직무(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 휴대 및 제시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에 의하여 처벌 받습니다.

2 · 외국인 투자가 및 가족의 외국인등록 절차

기업투자(D-8) 외국인 외국인등록 시 구비서류

- ①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② 여권원본,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3.5cm×4.5cm) 1장
- ③ 사업자등록증,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기업인 경우)
- ⑤ 체류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및 제공자 신분증 사본 등
 -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이 신청인이 아닌 경우
- ⑥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 (주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동반(F-3) 외국인 외국인등록 시 구비서류

- ① 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② 여권원본,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3.5cm×4.5cm) 1장,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③ 등록증 발급 수수료: 현금 3만원
 - ④ 체류지 입증서류
 - :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및 제공자 신분증 사본 등
 -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이 신청인이 아닌 경우
 - ⑤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외국인
 - : 재학증명서 (초·중·고등학교 중 재학 여부 확인)
 - ⑥ 외국인 초·중·고 재학사항 신고서 (hikorea.go.kr 서식 참고)
- ❖ (주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V

체류기간 연장

1. 체류기간 연장 개요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 ①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③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적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적음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체류기간 연장이란?

-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기간

-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구비)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신청 당일 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해외에서 민원신청 및 대리는 불가)

2 · 외국인 투자가 및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

기업투자(D-8)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시 구비서류 (외투법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투자가의 경우)

- ①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② 여권,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 ③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명서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3개월이내 법인등기부 전부사항 증명서
- 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54호 서식)

- ⑥ 영업실적 입증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전년도 손익계산서, 재무재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납부내역증명(법인세 등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행 수출 또는 수입증명서
 - 수출 또는 수입 물품 대금관련 증명서류(법인통장 외화 입/출금 내역에 표시 요망)
 - ⑦ 신청인 납세내역(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모바일, 무인민원,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 해당사항 선택
 - 소득금액증명(국세청)납세조합 발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 발행)
 - ⑧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hikorea.go.kr에서 서식 확인)
 - ⑨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www.4insure.or.kr) 증명서 발급에서 가입자명부 발급
 - ⑩ 법인통장 및 법인통장 거래내역 사본
 - ⑪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무실, 창고, 공장등) 사본 및 임차료 지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등)
 -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 ⑫ 체류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및 제공자 신분증 사본 등
 -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이 신청인이 아닌 경우
- ❖ (주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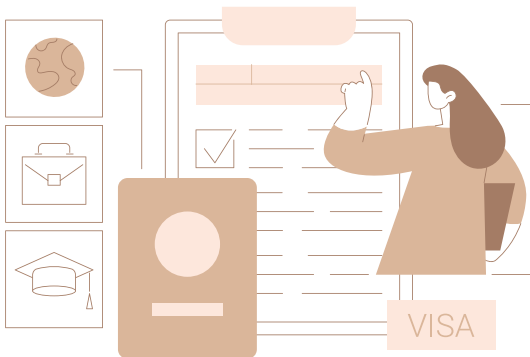
기업투자(D-8)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시 구비서류 (외투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

- ①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② 여권,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 ③ 파견명령서(외국 본사 발급), 재직증명서(한국회사에서 담당하는 직무 및 업무 명시)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 전부사항 증명서
 - 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4호 서식)
 - ⑥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명서
 - ⑦ 영업실적 입증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포함, 최근 3개월)
 - 재무재표 및 손익계산서
 - ⑧ 신청인 국내 급여 입증 서류 (택1)
 - 납부내역증명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을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근납세조합)
 - ※ 납부내역 증명은 (국세청 홈페이지(www. hometax.go.kr,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
 - ⑨ 외국인 직업 연간소득금액신고서 (hikorea.go.kr의 서식 확인)
 - ⑩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직원 수가 많은 경우 첫 페이지와 끝장만): 선택
 - ⑪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무실, 창고, 공장등) 사본 및 임차료 지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등): 법인명의 계약서
 -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 ⑫ 체류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및 제공자 신분증 사본 등
 -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이 신청인이 아닌 경우
- ❖ (주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동반(F-3)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시 구비서류

- ①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② 여권원본 및 사본
 - ③ 외국인등록증
 - ④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진단서
* 등록외국인이 출국하여 결핵고위험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보건소, 법무부 지정 병원 발행)
 - ⑤ 기업투자(D-8) 소지자 외국인등록증사본
 - ⑥ 체류지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등)
 - ⑥-1. 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인이 아닌 경우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제출 필요
 - ⑦ 수수료
- 연장수수료 6만원 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 ⑧ 만 6세 이상~만 18세 이하 외국인: 재학증명서(초·중·고 가운데 어느 학교에 재학 여부확인)
 - ⑧-1. 외국인 초·중·고 재학사항신고서
- ❖ (주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VI

체류자격 변경

1. 체류자격 변경 개요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체류자격변경허가)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③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갈음한다.

체류자격 변경이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기본원칙

- 원칙적으로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제출서류는 국번없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기간

- 반드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예시)

- 단기방문(C-3)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D-8)를 하려는 경우
- 어학연수(D-4)를 마친 후 대학에 유학(D-2) 하고자 하는 경우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 외국인 투자가 및 가족의 체류자격 변경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 구비서류 (외투법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투자자의 경우)

- ①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② 여권, 여권사본, 여권용 사진(3.5cm×4.5cm) 1매
- ③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발급 확인서 또는 법무부 지정병원)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3개월이내 법인등기부 전부사항 증명서
- ⑤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
- ⑥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⑦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 투자자금 도입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등)
 - ㉡ 현물출자인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 ⑧ 자본금 사용내역 및 입증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서(자본금 사용 내역 정리) 및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 법인설립관련 각종 수수료 영수증, 사무실 비품 및 법인 차량 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 등
- ⑨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등)
 - 사업장 전경·사무 공간·간판사진 등 자료
 - 공장 및 창고 임대차계약서, 공장등록증 등
- ⑩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 ⑪ 영업실적 입증서류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전년도 손익계산서, 재무재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납부내역증명(법인세 등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행 수출 또는 수입증명서
 - 수출 또는 수입 물품 대금관련 증명서류(법인통장에 외화 입/출금 내역 표시 요망)
 - 신청인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또는 납세조합 발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외국인 직업신고서
 - ⑫ 법인통장 및 법인통장 거래내역 사본
 - ⑬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 단, 전대차 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 ⑭ 체류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및 제공자 신분증 사본 등
 -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이 신청인이 아닌 경우
- ❖ (주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 구비서류 (외투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

- ①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34호 서식)
- ② 여권, 여권사본, 여권용 사진(3.5cm×4.5cm) 1매
- ③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발급 확인서 또는 법무부 지정병원)
- ④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 ※ 파견명령서는 해외 본사에서 발급한 파견명령서 또는 해외 본사의 제3국 현지 법인에서 발급한 파견명령서로 하며 반드시 파견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 파견명령서의 파견 회사와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상의 투자자가 상이한 경우 계열관계 입증서류 필요

- ⑤ 필수 전문인력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 입증 서류(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은 필요 없음): 자격증(기술자), 경력증명서, 학위증, 조직도 등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3개월이내 법인등기부 전부사항 증명서(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인 경우 별지 제출 요)
 - ⑦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
 - ⑧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⑨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 투자자금 도입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등)
 - ㉡ 현물출자인 경우
 - 현물출자자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 ⑩ 영업실적 입증서류(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 납부내역증명(법인세 등 포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전년도 손익계산서 및 재무재표
 - 외국인 직업신고서
 - ⑪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 단, 전대차 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 ⑫ 체류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및 제공자 신분증 사본 등
 -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이 신청인이 아닌 경우 체류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등
 -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이 신청인이 아닌 경우
- ❖ (주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D-8 자격 변경 예정자와 동반 입국한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의 동반(F-3)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 구비서류

- ①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② 여권 원본 및 사본
 - ③ 여권용 사진 1매
 - ④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발급 확인서 또는 법무부 지정병원)
 - ⑤ 기업투자(D-8) 소지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⑥ 가족관계증명서
 - 중국: 호구부, 결혼증명서
 - 일본: 호적등본
 - 기타국가: 결혼증명서(배우자), 출생증명서(자녀)
 - ⑦ 체류지입증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 ⑦-1. 계약서 상 임차인이 신청인이 아닌 경우 거주·숙소제공확인서
 - ⑧ 수수료
 - 자격변경 10만원 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 카드수수료 3만원(현금)
 - ⑨ 만 6세이상 만 18세 이하의 외국인: 재학증명서(초·중·고 중 어느 학교에 재학여부 확인)
 - ⑨-1. 외국인초·중·고 재학사항 신고서
- ❖ (주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VII

체류자격 부여

1. 체류자격 부여 개요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부여)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출생한 날부터 90일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체류자격부여란?

- 대한민국국적 상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는 외국인이 새로운 체류자격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체류자격부여 대상자

-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

체류자격부여 신청시기

- 체류자격부여 대상자는 체류자격부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내 출생자는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대한민국 국적 상실 등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체류자격부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한 내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체류자격부여 대상자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국내 출생자는 90일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부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부여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 외국인 투자가 국내 출생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

동반(F-3) 자격으로 체류자격 부여 시 구비서류

- ①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② 여권 원본 및 사본
 - ③ 여권용 사진 1매
 - ④ 기업투자(D-8) 소지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⑤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 ⑥ 체류지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 ⑥-1 계약서 상 임차인이 신청인이 아닌 경우 거주·숙소제공확인서
 - ⑦ 수수료
 - 자격부여 8만원 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 카드수수료 3만원(현금)
- ❖ (주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VIII

체류지 변경신고

1. 대상 및 시기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 변경사항을 적은 후 돌려주어야 한다.

대상

- 기업투자(D-8), 동반(F-3) 자격 등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시기

-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2 ·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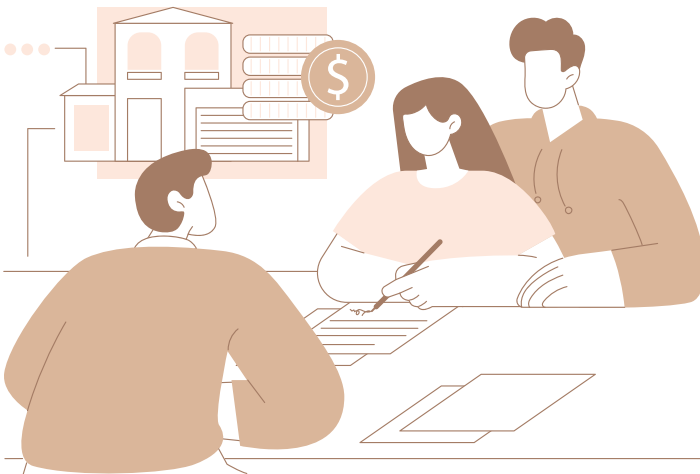
구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전(월)세 계약서, 우편물, 각종 공과금 고지서 (회사 등으로부터 숙소를 제공받은 경우 숙소제공확인서)

참고사항

-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IX

기타 체류허가 및 신고

1.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개요

- 체류자격외 활동이란?
 - 체류외국인이 현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 외의 다른 활동을 병행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행하고자 하는 활동이 전일 근무 등 주된 활동인 경우에는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출국 후 새로운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의 기본원칙
 - 90일 이하 단기비자 소지자는 체류자격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원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을 경우에는 체류자격외 활동을 제한합니다.
 - 여러 직장을 갖는 등 체류상태가 건실하지 못하고 국익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기간
 - 반드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 기업투자(D-8) 자격요건을 갖춘 체류 외국인이면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기업투자(D-8)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시 구비서류에 준합니다.

기업투자(D-8)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다른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 (제76조제2항 관련)에 나와 있는 각 체류자격 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첨부서류 참고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필한 체류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교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문화예술(D-1),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방문동거(F-1), 동반(F-3), 방문취업(H-2)

2 · 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 개요

· 재입국허가 대상

-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 ㉓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 소지자
- ㉔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체류자격 소지자
- ㉕ 결혼이민(F-6),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 상기 ㉓, ㉔, ㉕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외국인등록증 상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 면제

※ 단, 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참고로,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입국허가 면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입국허가 면제

· 재입국허가의 종류 및 신청서류

- 한 차례만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 재입국허가,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 재입국허가로 구분

구분	내용	최장기간	신청서류
단수 재입국	1회만 재입국 가능	1년	• 외교(A-1) ~ 협정(A-3): 재직증명서 • 나머지 체류자격은 제출서류 없이 신청서에 사유 기재
복수 재입국	2회 이상 재입국 가능	2년	• 외교(A-1) ~ 협정(A-3): 재직증명서 • 나머지 체류자격은 제출서류 없이 신청서에 사유 기재

- 50만 불 이상 고액투자 외국인(D-8, F-2) 자격 소지자는 복수 재입국 3년
까지 가능

3 · 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 개요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35조)
- 신고사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하는지 여부
 -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이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 그 취업개시 사실
 -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이 고용되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가 변경된 경우(명칭 변경을 포함)
 -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주재(D-7)부터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선원(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 신고기한
 - 위 신고사유가 발생 날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신고서
 - 변경사항 입증서류
 - 외국인 재학여부 신고서
 - 외국인 직업,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참고사항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업투자(D-8) 자격 투자자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

- 신고 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변경 포함), 같은 계열 회사 내의 이동 등
 - (예시1) 외투기업 A에 파견된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가 같은 계열회사인 외투기업 B로 근무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 필요
 - (예시2) 외투기업 A에서 경영활동을 위해 기업투자(D-8) 자격을 소지하고 체류 중이던 투자자가 외투기업 A 이외에 같은 계열 외투기업 B에서 사외이사로 활동(겸직)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 필요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파견명령서, 동일계열사 입증서류, 추가·변경 근무처의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추가·변경 근무처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 ❖ (주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위치

1. 서울/인천/경기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	전화/팩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전담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272 [우22382]	※ 민원실 (출입국사실증명 등) [제1터미널] T. 032-740-7391~2 F. 032-740-7395 [제2터미널] T. 032-740-7361~2 F. 032-740-7360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서울역출장소	출입국심사전담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지하2층 [우04301]	T. 02-362-8432 F. 02-362-8436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광명역출장소 (운영 중단)	출입국심사전담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 광명역 4번출구 지하1층) [우14347]	T. 02-899-9167 F. 02-899-9169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서울 9개구, 4개시 관악구, 광진구,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 용산구, 성남시, 하남시, 과천시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우08013]	T. 02-2650-6214 F. 02-2650-6295 [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 3층 [우03188]	T. 02-731-1799 F. 02-731-1791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	전화/팩스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제외), 부천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93(항동 7가 1-31) [우22306]	T. 032-890-6300 F. 032-890-6400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김포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김포시,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10번길 52 (학운리 2769) [우10047]	T. 031-981-0042 F. 031-981-0400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경기도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이천시, 화성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영통동) [우16705]	T. 031-695-3817 F. 031-695-3810 ※ 출입국사실증명발급 T. 031-695-3846 F. 031-695-3380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은 제외), 안성시, 오산시, 오산군용비행장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75 CK타워 3, 4층 [우17774]	T. 031-8024-9612 F. 031-8024-9640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평택항만 출장소	평택항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우17962]	T. 031-683-6938 F. 031-682-1794
서울남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울 7개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 강서구 마곡서1로 48 [우07799]	T. 02-6980-4812 F. 02-6980-4990 [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서울남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영등포출입국 민원센터	서울 7개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40 [우07379]	T. 02-3284-6000 F. 02-3284-6050
안산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체류, 사증, 국적, 증명발급 업무 제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88 (5층) [우15458]	T. 031-364-5700 F. 031-401-5721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	전화/팩스
안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종합민원센터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취급업무: 체류, 사증, 국적, 증명발급)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2층) [우15458]	T. 031-364-5719 F. 031-401-5734
안산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안산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경기도 안산시 부부로43 다문화지원본부 3층 (원곡동991-1) [우15377]	T. 031-364-5750 F. 031-494-5724
안산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시흥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59번길 5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2층 (정왕동 1366-6) [우15079]	T. 031-364-5762 F. 031-432-5701
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고양시, 파주시 제외),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덕계동 467-2) [우11443]	T. 031-828-9306 F. 031-828-9461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	고양시, 파주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중로 104번길 50 (구 화정동 964) [우10497]	T. 031-936-5018 F. 031-919-7663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포공항 출입국심사전담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38 [우07505]	T. 02-2664-6202 F. 02-2664-8096
화성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전담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슬항리 215-7) [우18538]	T. 031-8055-7000 F. 031-355-2019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전국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 해안북로 1204번길 123 [우22356]	[주간] (09:00~18:00) T. 032-745-3300 F. 032-745-3330 [야간, 공휴일] T. 032-745-3371 F. 032-745-3330

2 · 부산/경남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	전화/팩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부산광역시 (김해국제공항, 감천항, 다대포항 제외), 경상남도 양산시 (체류, 사증, 국적, 증명발급 업무 제외)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2-1 [우48940]	T. 051-461-3091~5 F. 051-463-7255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종합민원센터	부산광역시 (김해국제공항, 감천항, 다대포항 제외), 경상남도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취급업무: 체류, 사증, 국적, 증명발급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6 대한항공빌딩 1층, 2층 [우48936]	T. 051-461-3162 F. 051-461-3128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감천출장소	부산광역시 감천항, 다대포항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 (암남동) 화관동 11층 [우49277]	T. 051-254-3917 F. 051-254-3919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	김해시, 밀양시	경남 김해시 가락로 58 (부원동 830-1) 부원동우체국 5층 [우50921]	T. 055-344-7830~5 F. 055-344-7812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김해국제공항 출입국심사전담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우46718]	T. 051-979-1300 F. 051-979-1305
울산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5-1 [우44543]	T. 052-279-8024 F. 052-279-8028
창원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0 [우51716]	T. 055-981-6000 F. 055-247-9150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제출장소	경상남도 거제시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사1길 24 (연초면 연사리 302) [우53209]	T. 055-681-8133 F. 055-682-2433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	전화/팩스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천출장소	경상남도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450번지(동림동 181-29) [우52557]	T. 055-835-3988 F. 055-835-4087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통영출장소	경상남도 통영시	경남 통영시 남망길 5번지 (동호동 171-10) [우53051]	T. 055-645-3405 F. 055-645-3441

3 · 광주/전라/제주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	전화/팩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3 [우63150]	T. 064-741-5411~6 F. 064-741-5491
여수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전남 여수시 무선로 265 [우59638]	T. 061-689-5511 (야간: 061-689- 5551) F. 061-684-6974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양출장소	전라남도 광양시	전남 광양시 중동 2길 23 [우57784]	T. 061-792-1139 F. 061-792-9928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목포시, 완도군, 신안군, 무안군, 진도군, 영암군, 해남군,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제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911번길 22 (쌍촌동 627-1) [우61969]	T. 062-605-5280 F. 062-605-5299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우58533]	T. 061-453-8846 F. 061-453-8845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	전라남도 목포시, 완도군, 신안군, 무안군, 진도군, 영암군, 해남군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412번길 26(목암동) [우58684]	T. 061-283-7294 F. 061-282-7293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	전화/팩스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라북도 (군산시 제외)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 [우54903]	T. 063-249-8693~4 F. 063-245-6165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전라북도 군산시, 장항항, 군산미공군 비행장	전북 군산시 대학로 151-1 (문화동 877-21) [우54115]	T. 063-440-8400 F. 063-440-8405

4 · 대구/경북/강원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	전화/팩스
대구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칠곡군 제외)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 345 [우41069]	T. 053-980-3512 F. 053-980-3580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경북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13 [우37636]	T. 054-247-5363 F. 054-240-5492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구미출장소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칠곡군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구·금오공대 산학연구동) 2, 3층 [우39253]	T. 054-459-3505 F. 054-459-3580
춘천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강원도(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철원군 제외),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학곡리 29-1) [우24408]	T. 033-269-3210 F. 033-269-3294
춘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성출장소	고성터미널 남북왕래 출입심사전담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동해대로 9097 [우24701]	T. 033-680-5100 F. 033-680-5102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	전화/팩스
춘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	강원도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225 [우25769]	T. 033-535-5723 F. 033-533-8153
춘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	강원도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189, 속초법무합동청사 [우24854]	T. 033-636-8614 F. 033-636-8615

5 · 대전/충청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	전화/팩스
대전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당진항, 장항항, 보령항 제외)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7 (중촌동) [우34812]	T. 042-220- 2001~2, 4 F. 042-256-0496 ※ 체류관련팩스 F. 042-255-0496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불당동) 충남북부상공회의소 403호 [우31169]	T. 041-621-1347 F. 041-622-1345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아산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길 29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1층 [우31513]	T. 041-549-7441 F. 041-549-7443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산출장소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보령항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3로 28(읍내동) 서림빌딩 6층 [우31984]	T. 041-681-6188 F. 041-681-6182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	전화/팩스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당진출장소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항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79-33 항만지원센터2층 [우31719]	T. 041-352-6174 F. 041-352-6170
청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충청북도(영동군, 옥천군 제외), 청주국제공항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 [우28365]	T. 043-230-9000 F. 043-236-4907
청주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전담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 [우28634]	T. 043-290-7512 F. 043-290-7590

KOTRA자료 25-005

2025 외국투자자를 위한 비자가이드

발행일	2025년 1월
발행인	강경성
발행처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디자인/편집	(주)레드코벨소커뮤니케이션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화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ISSN	3058-8456 / 3022-5000(e-ISSN)

Copyright ©202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20
25

